

스승 존중·제자 사랑 & 행복한 교육공동체

더 행복한 교육, 다 행복한 교육

소중한 권리 함께 지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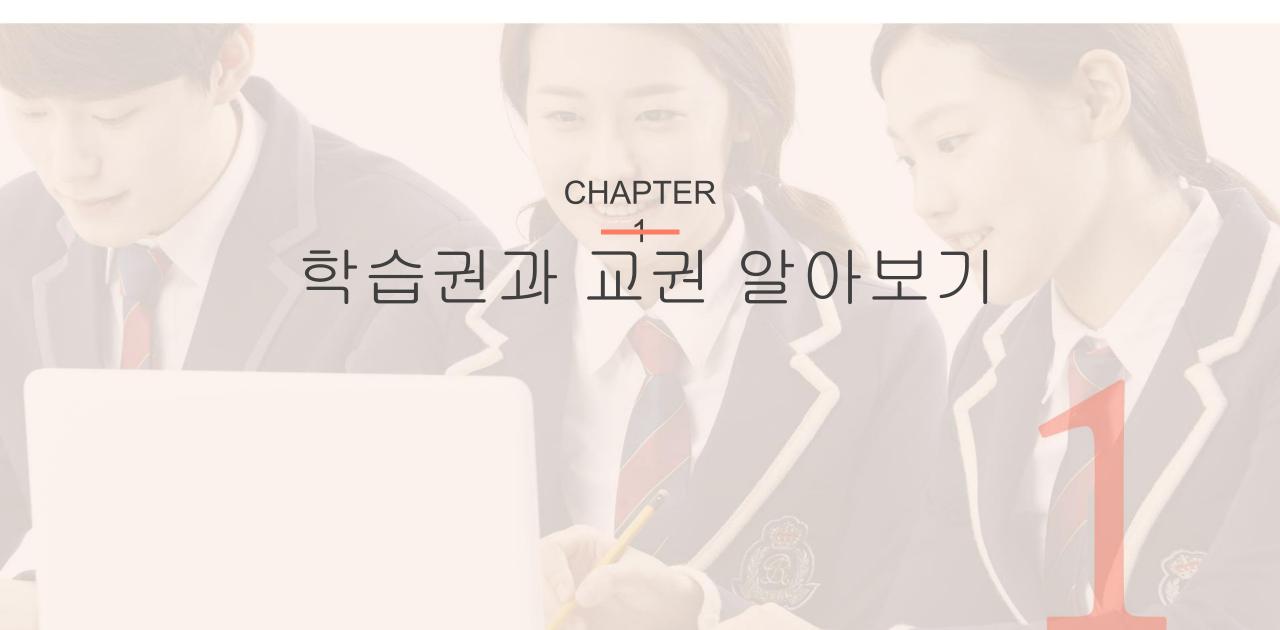


CONTEX 목 차

- 01 학습권과 교권
- 02 악습권과 교권의
- 관계 03 달라진
- 04 교원지위법 지켜가요









'학생B'는 어제 늦게까지 안자는 바람에 피곤해서 '교사'의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에 방해가 되도록 코를 골며 엎드려서 자고 있다.





'학생B'일어나서 책 펴세요.

('B군'은 같은 반 친구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쎈 척을 하고 싶었다.)





피곤해서 자는데 왜 깨우는데요? X나 빡치네.

('학생B'는 대들다 급기야 '교사'에게 의자를 집어 던졌다.) ('교사'는 이를 팔로 막다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쌤은 왜 자는 애를 괜히 깨워서 공부도 못하게 만들어. 짜증나네





옆에 애가 자고 있는데 수업이 되겠냐. '학생B'도 좀 심하네

(E군은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방송을 중계했다.)

[페이스북]

대박, '학생B'가 쌤 의자로 '선생님'에게 선빵 날렸다

'교사'는 다른 아이들의 부축을 받고 교실을 나올 수 있었다. 결국 '교사'는 전치 **7**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졸려서 자는데... 왜?"

내가 일부러 코를 곤 것도 아니고, 학생에게도 잘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이 있는데 왜 깨우고 난리야. 그리고 많은 애들이 보고 있는데 쪽팔리게 뭐라고 할건 뭐야. 흥분해서 의자를 던진 건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

→생은 자신의 인권이 무시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그냥 수업 하고 싶어요"

저는 A선생님도 B도 E도 모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먼저 선생님은 그냥 수업을 했어도 되는데 괜히 B를 깨워 모든 아이들이 수업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B는 아무리 피곤해도 선생님한테 왜 욕을 하고 의자를 던져요.

E는 그걸 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아무튼 저는 그냥 수업시간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B**와 **E**, 선생님의 행동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화가 나요.



생각해보 까고 있는 학생을 깨운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 학생의 학습권

> 인간적인 성장 발달을 위하여 학습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권리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는 학습의 자유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보호된다.-----

01 학습권과 교권 바 왔어보기



학생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 기회의 균등권

학교시설 이용권

학생 자치 활동권

교과서 선택권

교육과정에 대한 자유선택권 등

학생의 의무

학교규칙 지키기

교사의 교육 및 연구활동 방해 금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 확립 (교육기본법 제12조 3항)





"아...자괴감이 든다"

제가 자는 학생을 깨운 건 그 학생 한 명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학생이 자고 있는 걸 봤는데도 깨우지 않는다면 많은 학생들이 잠을 자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피곤해서 그러는 걸 알지만 깨웠어요. 이때 들리는 목소리 '아 X나 빡치네……" 전 자괴감이 드네요.



생각해보

예러분이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자는 학생을 어떻게 했을까요?

학생에게 욕을 들은 선생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



쿳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

교육과정 편성 권리







७ विक्वति स्वाप्ति स स्वाप्ति स्

가 관계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

교권(교육권)은 왜 존중되어야

할까요?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주인공이고 교육받을 권리(학습권)을 갖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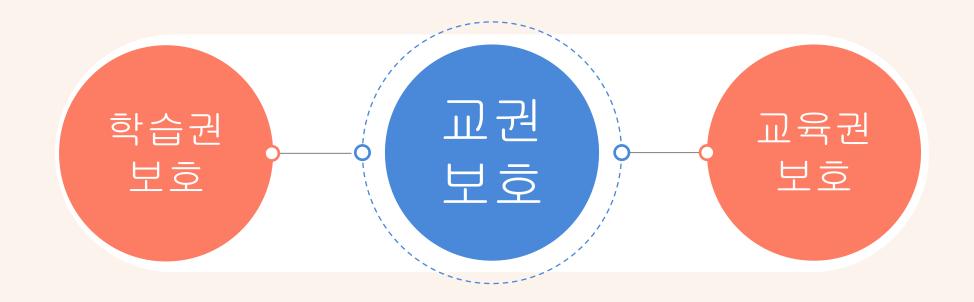
선생님은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교육권을 갖습니다



나 학급 변과 교권의 관계

결국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받기 위해 교권이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적 이해



- 형사법(고소 → 수사 → 기소 → 형사재판)
- 민사법(민사소송제기 → 민사재판)
 - 예) 학생이 학생을 폭행한 경우 : 형사 + 민사 책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징계
 - 예)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 : 형사 + 민사 책임 +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 학교 규칙 위반(선도위원회)과 비교

선도위원회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출석정지
- 퇴학

VS

교권보호위원회

- 교내봉사 사회봉사
- 특별교육&심리치료
- 출석정지
- 저학
- 퇴학 (단, 의무교육과정 제외)



라 관계활동 침해 유형

구분	상해, 폭행	모욕, 명예 훼손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공무 및 업무방해	협박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통시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기타	합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65	1,309	164	69	65	15	16	13	263	165*	2,244
	7.4%	58.3%	7.3%	3.1%	2.9%	0.7%	0.7%	0.6%	11.7%	7.4%	100%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	7	82	7	33	16	1	-	3	35	26**	210
	3.3%	39.0%	3.3%	15.7%	7.6%	0.5%	0%	1.4%	16.7%	12.4%	100%

^{*} 기타(학교장 판단) : 무례한 행동(언동), 지속적 지시불이행, 수업방해, 폭언 및 욕설, 민원제기 등

Note. 2018년부터 교원지위법 등 관련법에 따른 교권침해 유형으로 분류 [출처] 시 · 도교육청 제출 자료(교육통계서비스)

^{**}기타(학교장 판단): 민원제기, 보상요구, 수업진행 방해, 폭언 등

02 학습권과 교권의 라 교육활동 침해 유형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

- 손으로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 공포 또는 경악케 하여 정신장애나 온전한 신체 기능에 손상을 준 경우
- 오랜 시간 협박하여 실신하게 하는 경우

- 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7단계

O Solo

라 교육활동 침해 유형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사람의 신체를 때리려고 하는 경우
- 사람의 신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
-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경우
-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경우

- 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7단계

라 교육활동 침해 유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가족을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 외압을 이용해 징계받게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 당신의 집을 알고 있다며, 퇴근길에 해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 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7단계

라 교육활동 침해 유형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어떤 학생이 다른 한 명에게 특정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이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
- 형법 제307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7단계

6613000

라 교육활동 침해 유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유형력), 은닉(숨김),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학교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경우
- 수업 중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학교에 걸어 놓은 그림에 낙서하여 걸어 둘 수 없는 경우

- 형법 제36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7단계

라 교육활동 침해 유형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포옹, 만지기 등)하여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 교사의 나체를 그림으로 그려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
- 학생이 음란한 영상,사진,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받음 (강제 추행, 공연음란 등)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7단계

라 교육활동 침해 유형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 비방을 목적으로 "우리 담임교사는 동성애자야, 매일 남학생 손잡고 다녀"라고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경우
- 전화, 이메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구체적 협박이 아닌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문자메세지를 반복전송한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7단계

라 교육활동 침해 유형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공립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한 학생을 찾겠다고, 1시간 동안 수업하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 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낚아채서 넘어뜨리는경우
- 공립 형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립 형법 제314조 (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7단계



바로바보기

앞선 이야기에서 선생님의 교권은 어떻게 침해되었을까요?



1 수업방해

수업 중 학생이 졸아서 수업 분위기를 흐림



2 모욕

학생에게 욕설을 들음



3 상해

의자에 맞아 전치**7**주의 상해를 입음



4 불법정보 유통

폭행 당한 영상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됨

७ विश्व व विश्व विष्य विश्व व

라 과글해보기





७ विश्व व विश्व विष्य विश्व विष्य विश्व व

바로바보기







७ विश्व व विश्व विष्य विश्व व

19년 10월 17일 시행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७ किंडू वर्षे

19년 10월 17일 시행



교육감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무조건적인형사처벌 아님)



19년 10월 17일 시행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권보호 예방교육 실시 (연 1회)

Opingor

19년 10월 17일 시행 전학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강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교사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 2 학교 교칙의 준수 및 학내 질서 문란 금지
- 3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 확립
- 4 교사의 교육과 연구활동 방해 금지



교권을 보호하기 앞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친구들의 공부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공부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합니다.

내가 존중 받고 싶듯이 선생님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기때문에 교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